

ISO 22301 개정판(2019)으로의 인증전환 기준(계획)

2020.04.16.(R.0)

케이에스알인증원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케이에스알인증원(이하 'KSR인증원'이라 한다)이 인증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ISO 22301)인증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ISO 22301:2019 표준 적용에 따른 준비사항, 적용기준 및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이하 '전환심사'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기존 인증서 인증 유효기간

(1) 기존 인증의 유효성은 ISO 22301:2019 발간일로부터 3년이며, 동 기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다.

※ ISO 22301:2019 발간일 및 유효기간 : 2019.10.01. / 2022.10.31.

(2) 전환기간 중에 발행하는 개정 전 표준(ISO 22301:2012)으로 인증 할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성은 3년의 전환기간 종료일과 일치해야 한다.

(3) KSR인증원은 ISO 22301:2019 발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는 ISO 22301:2012 표준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2.2 ISO 22301:2019 인증서 발행

(1) KSR인증원은 KAB로부터 ISO 22301:2019 인증이 가능함을 인정받고 클라이언트가 ISO 22301:2019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한 후에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ISO 22301:2019에 부합하는 한국산업표준(KS)이 발간된 이후, 인증서에 ISO 개정판과 이에 부합하는 한국산업표준의 병기가 가능하다.

2.3 인증 전환

(1) KSR인증원은 인증 클라이언트와의 합의에 따라 정기적인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통해 전환심사를 수행한다.

(2) 기존에 예정된 사후관리심사나 갱신심사와 병행하여 전환심사가 수행될 경우 기존 표준과 신규 표준에 따라 모든 활동을 심사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사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최대 0.5M/D)

(3) ISO 22301:2019 인증을 전환하고자 하는 인증 클라이언트는 KSR인증원의 전환 요구사항 준수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인증 클라이언트의 갭(gap) 파악

② 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기존의 경영시스템을 최신화.

③ 이전 준비를 위해 KSR인증원과 연락을 취함

3. 인정기관(KAB)으로 부터의 인정이전

3.1 인정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1) KSR인증원은 2019년판 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하도록 한다.

- ① 심사원 및 기타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적격성 검증
- ② 인증 전환과 관련하여 인증조직에게 전환프로세스 등 전환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③ ISO 22301:2019 표준을 이용한 인증조직 별 인증심사 시기와 인증활동 및 인증결정 시기 계획
- ④ 신규 클라이언트 및 ISO 22301:2109 사용자들에게 실행(전환)을 권장
- ⑤ 신규 표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방법 계획
- ⑥ ISO 22301:2019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 ⑦ ISO 22301:2019 발간 후 3년 내에 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인증조직에게 취해야 할 조치
⇒ ISO 22301:2012 표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인증 미전환 시 인증은 취소됨.
단, 전환기간 내 심사를 진행한 경우는 아래사항을 적용한다.
[부적합사항의 해결과 인정이전이 완료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 클라이언트의 인증은 자동으로 정지되며, 이로 인한 인증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인정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증은 취소되며, 이때 인증 유효기간은 이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한정한다.]

(2) KSR인증원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① 신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증조직의 조치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은 식별되고 문서화된 발견사항으로 인증조직에게 제시되도록 한다.
- ② 심사원은 식별된 미해결된 사항이 적절히 처리되고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이 실증된 경우에 한하여 ISO 22301:2019 표준에 대한 인증을 추천할 수 있다.
- ③ ISO 22301:2019 인증 승인 추천 전에 선행된 이전심사와 관련된 모든 발견사항이 시정조치 되고 적합성과 관련하여 평가한 기록이 검증을 위해 제시되도록 한다.
- ④ KSR인증원은 이전단계에서 시행한 신규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조직의 적합성평가가 인증조직의 ISO 22301:2012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유지를 훼손하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⑤ ISO 22301:2019에 대한 인증서 발행에 대한 결정은 모든 미해결된 중부적합과 관련된 인증조직의 조치사항이 검토, 승인 및 검증되고 또한, 모든 경부적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시정조치 계획이 검토되고 승인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3) KSR인증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증 전환을 한다.

1) KSR인증원 인증자원의 교육

- ① 인증심사원의 적격성 검증 (검증위원 포함)
 - 8시간 이상 교육수료 (스터디 리포트 제출 검증)
- ② 인증관련 인원(계약검토자, 행정인원 등)의 교육
 - 4시간 이상 교육이수 (별도 적격성평가 없음.)

2) KSR인증원 인증자원의 적격성 검증

⇒ 리포트 제출로 적격성 검증

3) 기타 준비활동

- ① 타 인증기관과의 의사소통(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관련 정보 수집)
- ② KSR인증원의 이전 프로세스 전체에 걸친 인증 클라이언트의 지속적인 적합성 보장방안
- ③ 2019년판 발간 후 3년 내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인증클라이언트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 (예) 인증 무효화 및 취소

3.2 인증이전 신청

(1) 개정판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인증 클라이언트는 붙임1의

“인증표준 전환신청서”를 KSR인증원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사후관리심사와 인증 전환심사를 병행할 경우 : 심사 계획월 1개월 이내
- ② 정기심사와 무관하게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 현장심사 희망일로부터 15일 이내

(2) 인증 클라이언트는 2019년 개정판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일로부터 개정 전 표준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2019년 개정판 발급일로부터 2년 5개월 전까지 인증 전환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3.3 인증전환 확인 및 결과 통보

(1) KSR인증원은 정기 사후관리심사 시 인증기관의 전환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① 인증 심사원은 전환심사가 계획된 클라이언트의 심사일정표에 전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시간을 배정하여 진행한다.
- ② 인증 심사원은 전환심사 결과에 대해 “문서화된 정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이전의 유효성을 기록 및 보고한다.
- ③ KSR인증원의 검증심사원은 전환심사 보고서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인증유효기간은 기존의 인정유효기간을 따른다.

3.4 미 전환 인증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

ISO 22301:2019년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의 인증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

3.5 신규로 2019년 개정판으로 인증신청

- (1)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판으로 인증신청이 가능하나, 인정기관(KAB)의 인정심사 진행결과에 따라 최초인증심사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시기가 결정된다.
- (2) 클라이언트는 인증서 발급 희망일을 고려하여, KSR인증원과 개정판 인증서 발급 가능 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신청 시 적용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6 개정판 인증전환 현황 보고

KSR인증원은 인정기관(KAB)에 해당 인증조직의 전환율을 인증 전환완료일(2022.10.31.)로부터 2022.12.31.일까지 다음사항을 보고한다.

- (1) 인증전환 완료조직 수
 - (2) 인증전환이 미완료된 조직의 수, 명단 및 인증기관의 조치 내용
 - (3) 신규 인증조직의 수
 - (4) 유효한 인증조직의 수
- ※ 인증조직의 수 : 발행한 인증서의 수

4. KSR 전환계획

4.1 인증심사원 전환교육 실시

- (1)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 (2) 교육장소 : KSR인재개발원

4.2 인증관련 행정인원 교육 실시

- (1)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2) 교육장소 : KSR 회의실 또는 KSR인재개발원

4.3 인증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환 자료제공

- (1) 인증전환계획 안내 - 메일발송

4.5, 인증업무 기능별에 해당되는 인원의 적격성 부여 : 인증지원팀 주관

- (1) 계약검토자 : 교육수료로 대체
- (2) 검증인원 : 전환교육 8시간이수 및 스터디 리포트 제출
- (3)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 전환교육 8시간이수 및 스터디 리포트 제출

(4) 내부심사원, 행정인원 등 : 교육수료로 대체

4.6 클라이언트의 인증전환 신청서 접수 : 사후관리팀 주관

- (1) 심사팀장은 인증심사 종결회의 시 전환계획 설명 후 전환신청서 수령
- (2) 기타 :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 메일, FAX 등 수신

4.7 전환심사 실시 : 사후관리팀 주관

- (1) 클라이언트의 전환심사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전환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 (2) 전환심사 신청서 접수 시 희망시기 검토 후 협의 조정하여 결정

* 부칙 : 이 기준은 ISO 22301:2019으로의 인증전환이 모두 완료되는 즉시 폐기한다.

※ 참고사항

